

제31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23.
전문위원 신정경

I. 조례안 개요

1. 제안개요

- 가. 의안번호: 제569호(행정사무감사 조례) ※ 제570호(기본 조례)와 연계 발의
- 나. 제출자: 소형준 의원 등 14인
- 다. 제출일자: 2026. 2. 25.
- 라. 회부일자: 2026. 3. 10.

2. 제안이유

- 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추진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례 전반의 자구 정비

3. 주요내용

- 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나. 자치법규 순화 및 자구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2026. 3. 3.~2026. 3. 10.(의견없음)

II.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의 적정성 검토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6월) 기간에서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으로 변경함
- 감사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으로써 당해 연도 사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며, 특히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즉각 반영하는 감사-예산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실시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9일 이내로 유지하되, 정례회 안건 조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어긋남 없이 일치시켜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길잡이로 만들려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2¹)개 의회가 이미 제2차 정례회(11월~12월)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고 있는 흐름에 부합하며, 감사의 결과를 예산안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을 마련함
- 연말에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병행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본 조례에서 확보한 5일의 선제적 회기 일정(11월 15일 집회)을 활용한 고효율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1) 광진구, 중구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2차 정례회 중 선택 실시

I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최상위 근거임.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53조]

- 감사의 실시 시기, 대상 기관, 감사 방법(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시 위임사무(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사 시기(1차 또는 2차 정례회), 세부 일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의회의 기본 조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II

서울시 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시기 현황

연번	자치구	시기	정례회 (1차)	정례회 (2차)	기간	행정사무감사
1	강남구	2차	6월 10일	11월 15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21조)
2	강동구	2차	6월 첫 번째 수요일	11월 세 번째 수요일	50일 이내	
3	강북구	2차	6월 1일/	11월 17일	50일 이내	
4	강서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80일 이내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5	관악구	2차	6월 8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31조)
6	광진구	1차 또는 2차	5월 26일	11월 22	50일 이내	기본 조례(제9조)
7	구로구	1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27일	55일 이내	
8	금천구	1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9	노원구	2차	6월 1일	11월 18일		기본조례(제9조)
10	도봉구	2차	6월 8일	11월 17일		
11	동대문구	1차	5월 26일	11월 27일		
12	동작구	2차	6월 10일	11월 13일	60일 이내	
13	마포구	1차	6월 1일	11월 25일	50일 이내	
14	서대문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둘째 주 화요일	65일 이내	기본 조례(제25조)
15	서초구	2차	6월 1일	11월 15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16	성동구	1차	6월 5일	11월 25	50일 이내	
17	성북구	1차	6월 2일	11월 20일	50일 이내	
18	송파구	2차	6월 두 번째 수요일	11월 19일	45일 이내	
19	양천구	1차	5월 25일	11월 29일		
20	영등포구	2차	6월 12일	11월 20일	60일 이내	
21	용산구	2차	6월 1일	11월 20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2	은평구	2차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두 번째 화요일	60일 이내	
23	종로구	1차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 20일	20일 이상	기본 조례(제15조)
24	중구	1차 또는 2차	6월 첫째 주 수요일	11월 셋째 주 수요일	50일 이내	기본 조례
25	중랑구	1차	5월 25일	11월 28일	60일 이내	기본 조례

구분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1차 또는 2차
개소수(25)	10	13	2
해당 의회	구로,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종로, 중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노원, 도봉, 동작,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은평	광진구, 중구

III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연혁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조례 개정 연혁>

	개정시행일	내용	행감 시행 시기
1	1991. 4. 13	시기 명시 없음	91. 12. 6 정기회
2	1992. 4. 30	제2조(감사)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	92. 11. 25, ~ 93.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3	1994. 11. 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94. 11. 25.~ 99. 11. 25 정기회기 중 실시
4	2000. 4.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정례회 2회 실시 2000. 6, 10 ~ 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5	2008. 3. 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6	2011.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1차 정례회기 중

IV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 시기 변경 시 변화되는 점

구분	현행(1차 정례회/6월)	변경 시(2차 정례회/11월)
감사 대상 기간	◆ 전년도 확정 사업 + 당해 연도 상반기	◆ 당해 연도 진행 사업 (거의 1년치)
데이터 기준	◆ 전년도 결산서 기준 (완결된 데이터)	◆ 당해 연도 집행 현황 (진행 중인 데이터)
연계 업무	◆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환류, 사후적 확인 및 시정 요구	◆ 실시간 점검 및 예산 연계 ◆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

□ 시기별 장·단점

구분	1차	2차
장점	① 결산과의 연계: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결산)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므로, 확정된 수치에 근거한 정확한 비판이 가능	① 예산 환류의 실효성 극대화: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와 과오를 즉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 또는 증액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음 ② 당해 연도 사업의 실시간 평가: 11월에 실시하므로 사실상 1년치 업무 전체를 훑어볼 수 있어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 ③ 행정의 긴장도 유지: 연말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음.
단점	① 예산 편성과의 괴리: 감사가 끝난 후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시차가 있어, 감사 결과가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① 의회 및 집행부 피로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한꺼번에 몰려 심도 있는 검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2차 정례회 변경 시 당해 연도 예산 집행 현황 과 불용 예산 현황 및 사유를 집중 점검함. 이를 통해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쓰는 ‘밀어내기식 집행’을 방지하고, 남은 예산을 확인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즉각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내년도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 11월 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 성과평가와 차기 연도 예산 편성의 유기적 결합 도모